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15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유상범 · 엄태영 · 조배숙
권영세 · 박충권 · 이인선
박수영 · 구자근 · 윤영석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료의”를 “자료(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u>자료의</u>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u>자료(공</u> <u>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u> <u>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u> <u>의</u>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u>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u>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④ ----- ----- ----- <u>제3항</u> ----- -----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 ----- ----- -----. ⑤ ----- ----- -----제3 항----- ----- ----- -----.
---	---